

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17년 4월 21일

개정 2017년 5월 24일

개정 2020년 7월 30일

개정 2023년 2월 23일

개정 2024년 8월 21일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본회 정관 제37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,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이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위원회는 문경시체육회 각종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과 이사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이사회의 위임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거나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한다.

1. 이사회 심의사항
2. 각종 기금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3. 시비 확보에 관한 사항
4.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사항
5.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체육회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7. 체육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8. 자체 또는 중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9. 체육회 임원 및 사무국 인사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05.24.>
10. 기타 주요사항 <개정 2017.05.24.>

제4조(조직) ① 본 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체육회 임원 및 체육계인사로 구성하며(당연직제외)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둔다. <개정 2023.02.23.>

② 위원장은 체육회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 다만, 민선 초대 위원은 당해 임기종료일(2023년)까지로 하고 모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7.30.>

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장을 간사로 한다.

<개정 2017.5.24>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단, 예·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,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유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, 사무국장 순으로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제6조(사무처리) 본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본회 사무국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.

제7조(시행세칙) 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시행세칙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 <2017.04.21.>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05.24.>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07.30.>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02.23.>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4.00.00.>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